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1185 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)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1호(2009.3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43(2011.6.02)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07호(2012.11.15.)로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어 및 2009.11.27.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12-89호(2012.6.14.) 사업시행인가, 성북구 고시 제 2015-25호(2015.2.23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,
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10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길음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(안)

1. 공람기간 : 2015.12.10 ~ 2015.12.24 (14일간)
2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54)
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 909-8052)
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4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
 - 가. 사업명칭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나. 위 치 :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
 - 다. 시행면적 : 19,488.0㎡
 - 라. 시 행 자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(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34(정릉동))

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바. 건축계획 : 지하4층/지상24층, 5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3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사. 변경내용 :

- 2015.2.23. 관리처분인가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반영한 자금계획 변경
- 평형별 단위세대 평면개선 및 공급면적 변경 등 건축계획 변경
-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변경

5. 기타사항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및 길음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